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83호 2021. 2. 8.(월)

조 례

-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17
-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
-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29
-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34
-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37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0
-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64

규 칙

-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1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9

고 시

-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해제기준 관련 기한연장 고시----- 81

공 고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82

회람							
----	--	--	--	--	--	--	--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41 호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무원의**” 을 “**공무원 등의**” 으로, “**공무원의**” 을 “**공무원 등의**” 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원**” 을 “**공무원 등**”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공무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 분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과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공무원 등”으로 한다.

제3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날”을 “날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제1항 본문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를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5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기관에서 보상·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제10조(종전의 제9조)제1항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별표의 “제7조 관련”을 “제8조 관련”으로, “수하거나”를 “수수하거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 기준
1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	조례 제3조제2호 관련(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조례 제3조제3호 관련(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

※ 지급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u>공무원의</u>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공무원의</u>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공무원 등의</u> ----- ----- ----- <u>공무원 등의</u>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부정부패”라 함은 <u>공무원이</u>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u>공무원 등</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3.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시 소속 공무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 다. 시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제3조(지급대상) 부정부패 신고포상
금은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과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이하 “부정부패 행위”
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

1. ~ 3. (생략)

제3조의2(신고기한) 신고는 부정부
패 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
무원법」 제73조의2를 준용한다.

<신 설>

라.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임명·위
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
동의·추천·제청하는 기관·단
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
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의 임직원

제3조(지급대상) -----
-- 공무원 등-----

-----.

1. ~ 3.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신고기한) ① -----
----- 날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대범죄
(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의 경우
에는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

<신 설>

제6조(신고의 처리)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징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고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공직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요구, 필요한 자료·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당해 부패행위 혐의가 사실로 판명된 경우에는 징계, 환수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사실

제7조(신고자의 보호) ① 시장-----

을 신고하거나, 이를 알고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자 보호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의한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책임을 진다.

제7조 (생략)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생략)

<신설>

<신설>

<신설>

2. (생략)

<신설>

3. (생략)

제9조(환수) 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후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 또는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포상

-----.

② 시장은 제1항-----
-----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

-----.

1. (현행과 같음)

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신고내용이 부패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부패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5. (현행 제2호와 같음)

6. 다른 기관에서 보상·포상금을 수령하여 중복 지급되는 사항

7. (현행 제3호와 같음)

제10조(환수) ① -----
----- 제9조-----

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 (생 략)

[별 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7조 관련)

구분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 기준
1	·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	·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

※ 지급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별 표]

부정부패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제8조 관련)

구분	지 급 대 상	포상금 지급 기준
1	· 조례 제3조제1호 관련(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 받는 행위의 신고)	· 금품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제공액의 10배 이내
2	· 조례 제3조제2호 관련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 불이행에 따라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의 신고)	·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3	· 조례 제3조제3호 관련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청탁 행위)	· 알선·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신고금액의 10배 이내 · 알선·청탁행위신고 : 100 만원

※ 지급 상한액은 100백만원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는 위 각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분할 지급한다.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42 호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고등학교**”를 “**중·고등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학금은 통장 자녀에게 재학기간 중 학력별 1회만 지급하며, 장학금 수혜 후 두 학기동안 기 수혜자녀 및 다른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을 제한한다.

제2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통장 자녀 장학금 액수보다 적은 경우 해당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4조제1항 중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를 “**별표의 기준**”으로, “**개시후**”를 “**개시 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고등학생**”을 “**중·고등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동간의 균형**”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력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8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통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1. 총점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성적 우수분야	중·고등 학생	90점이상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대학생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관표창 이상 수상자	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50	40	30	20	10

※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 특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10

다. 통장 상훈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
점 수	10	9	8	7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신청인이 많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1. 임기가 오래된 통장의 자녀
2. 연령이 많은 통장의 자녀

제6조 (장학금액) 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을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②목포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경우 목포지역에 소재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지급금액의 150% 이내로 한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삭 제
2. · 3. (생 략)
4.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삭 제>-----

-----.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항목의 고득점자, 고학력자, 장기재직 통장의 자녀, 통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제6조 (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그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제8조 (지급의 정지) ①-----

-----.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을 사용한 때

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통장자녀 장학금 심사기준

1. 총점배분

계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경력	통장 상훈
100	50	40	10

2. 항목별 심사기준

가. 학업성적 또는 특기

학업 성적 우수 분야	중 고 등 학생	90점이상	85점이상 ~90점미만	80점이상 ~85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대학생	4.0이상	3.5이상 ~4.0미만	3.0이상 ~3.5미만	2.5이상 ~3.0미만	2.0이상 ~2.5미만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 분야	국가대표급, 각종 대회 장려표창 이상 수상자	도대표급,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 표창 수상자	군의 대표급, 군수 또는 교육장표창 수상자	학교 대표급, 학교장표창 수상자	수상경력이 없는 예·체능 또는 기능 특기자	
점 수	50	40	30	20	10	

※ 학업성적: 직전학기 성적 / 특기: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년도를 제외한 최근 1년 이내 수상이력

나. 통장 경력

근속연수	7년 이상	6년이상 7년미만	5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점 수	40	35	30	25	20	15	10

다. 통장 상훈

훈 격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도지사	시장
점 수	10	9	8	7

※ 행정기관 상훈에 한하며, 상위훈격 한개만 인정함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43 호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목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차상위 계층
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4. 그 밖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성인용 보행기를 1인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노인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선정) 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①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

- ②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사용이 불필요한 신체기능상태일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회수) 허위, 중복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신청인	성명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연락처			
담당 공무원 확인 및 작성	건강상태	※ 거동불편정도 및 질환 등 구체적으로 기재		
	경제상태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 등 확인		
	지원상황	※ 타 법령 및 지원 사업으로 지원받은 사례 등 확인 있음 () 없음 ()		
「목포시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통보한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본인의 주민등록자료 등을 담당 공무원이 열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뒷면]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 「목포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자택, 휴대전화), 주소, 장기요양등급,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 계층 보장 여부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 지원금 지급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

위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행복이음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 동의 】

- 목포시는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신청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상자 확인을 위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이용

행복이음을 통한 장기요양등급 및 사회보장급여 적합 여부 조회에 동의하십니까?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동의인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

연 번	대상자명	생년월일	주소	신청자명	대상자와의 관계	신청일자	지급일자	비고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44 호

목포시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이 자기주도적 삶의 역량을 강화하고 민주적 생활을 고양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기회를 확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참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 활동”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 활동을 말한다.
3. “청소년 참여”란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의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민주적 과정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주는 의사결정에 공유하고 정책의제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주체로 성장을 추구함을 말한다.
4. “청소년 참여위원회”란 「청소년 기본법」 제2조의2의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 및 조례와의 관계) 청소년 활동 진흥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청소년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장받는다.

- ② 청소년은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 ④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하며 가정·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제7조(청소년 참여활동 기본 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청소년들의 역량과 실효성 있는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주요시책 및 연차별 추진계획
3.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5. 그 밖에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청소년을 포함한 목포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의 참여활동 사업)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참여활동 참여 및 자치활동
2. 청소년 참여활동 교육 및 포럼
3.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4. 청소년의회, 청소년박람회
5. 청소년 참여활동 자문단 및 성장협의체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소년 참여 실태 조사 등) ① 시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 의식 및 실태조사를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며, 이를 제7조의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의회」, 「청소년 포럼」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 참여위원회

제10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 의견 수렴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목포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 추진, 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등
2.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거나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기획된 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행사진행 등

제11조(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시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12조(청소년참여위원회 권리와 의무)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는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하여야 한다.

제13조(청소년참여위원의 위촉 및 임기) ① 위원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도 가능하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사임이나 해촉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청소년참여위원의 해촉)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이 의결된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회의 운영규칙에 의한 경우

② 위원이 임기 중 타 시·군으로 전학, 주민등록 이전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청소년참여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 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보칙

제16조(의견수렴) ① 시장은 청소년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에서는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 및 포상 등) ①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식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위원 및 일반 청소년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 또는 문화탐방·국제교류 등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를 시 청소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45 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 부 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조례」에 따른 목포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제2조 관련)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	-----	------	-----

골목형 상점가 개 요	상점가명		
	주요 소재지		
	상점가 규 모	토지 면적: m ² , 건물 연면적: m ² , 영업장 면적: m ² , 점포 수: 개	
	업종별 점포 수		

상인 조직	명 칭	대 표 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립일	회 원 수

시설 현황	주요시설	건축물: 층 동, 층 동, 층 동
	편의시설	화장실: 개, 주차장: m ² , 기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3조 각 호에 동의를 하는 자의(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서명·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지번, 면적 기재)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

■ [별지 제2호 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제2조 관련)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상점가명:
2. 대표자 성명:
3. 소 재 지:
4. 면 적: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46 호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가 설치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취수시설”이란 해수취수시설 및 송수·급수관로, 자동제어 등의 제반 시설을 말한다.
2. “공사”란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의 설치장소까지 연결하는 송수관 및 그 밖의 관리시설의 설치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해수취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총 비용(전기요금, 전기안전 관리비, 통신요금, 수선유지관리비, 인건비)으로 해수취수시설을 공급받는 업체들로 부과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해수취수시설로 해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목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해수취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해수취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수취수시설 사용 단체 또는 해수취수시설물 관리와 운영 능력을 보유한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관리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업무의 대상범위,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등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자를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5조제2항의 협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해수공급의 범위) 해수공급은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에 입주한 수산식품 가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그 외의 지역은 공급 용량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다.

제8조(해수공급 신청) ① 해수취수시설을 통하여 해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해수취수시설까지 연결 공사를 직접 설치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 따라 시설관리자에게 해수공급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설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용자가 해수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9조(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수공급의 취소 및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
2. 해수공급 원수 수질불량 및 시설의 설비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해수공급시설의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4.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사용료) 시설관리자는 해수취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해 발생하는 사용료를 사용자 별로 부과하며, 사용자는 부과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지방세기본법」,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목포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해수취수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47 호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호 중 “**또는 대수선하는**” 을 “**하는**” 으로 한다.

제24조의2 중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 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제1호**” 로 한다.

제24조의3의 제목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로하고, 제1항 중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로, “**수시점검**” 을 “**긴급점검**”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시점검**” 을 “**긴급점검**” 으로 한다.

제3장에 제24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4(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다.

제28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 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3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최소폭은 4미터 이상일 것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것
5.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7.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공개공지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고,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6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최고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바닥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6조의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의5(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별표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제5호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6조 내지 제36조의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별표 5] <신설 2020.00.00.>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제34조)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나. 배치도: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0.5제곱미터(m²) 이상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0.00.00.>

관리번호

-

공개공지 관리대장(제34조 관련)

1. 공개공지 현황

위 치		목포시 로 (○○동) (번지)				
건 물 명				사용승인일		
건 축 물 기 본 정 보	대 지 면 적	m ²		연 면 적	m ²	
	건 폐 율	%		용 적 륜	%	
	층 수	지상	층	주 용 도		
		지하	층			
	건 축 기 준 완 화 내 용	용적률 완 화				
		높이 완화				
		기 타				
	건 축 주			연 락 처		
	설 계 자			연 락 처		
	시 공 자			연 락 처		
공개공 지 기 본 정 보	면 적	m ²		유 형 ¹⁾		
	조 성 시 설	휴 게 시 설	조 경	☐ 설치(개소) ☐ ☐ 미설치 설치면적 m ²	벤 치	☐ 설치(개) ☐ ☐ 미설치
			테이블	☐ 설치(개) ☐ ☐ 미설치	파고라	☐ 설치(개) ☐ ☐ 미설치
		기 타 시 설	조 명	☐ 설치(개) ☐ ☐ 미설치	기타시설 ²⁾	☐ 설치(개))
	안내 표지판	설치 방법	☐ 부착형(건물벽, 바닥, 시설물에 부착) ☐ 스탠드형 (독립된 표지판)			
	감 리 자 ³⁾	○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감리자로서 건축허가 시 공개공지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감리 건축사 (인)(사무소명 :)				
공 개 공 지 배 치 도 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또는 건축물이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한다)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1. ~ 6. (생략)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 ----- -----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 하는 ----- --
제2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영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24조의2(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 ----- ----- ----- -----.
제24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라 영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화재,	제24조의3(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의 실시) 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

침수 등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어 수시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시점검 대상으로 지정·통보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30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고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에 따라 정하는 검사 주기는 년 1회로 한다.

<신 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⑤ (생략)

----- 긴급점검-----

-----긴급점검-----
-----.

② ----- 긴급점검 -----

-----.

제24조의4(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실시)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으로 한다.

제28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의 특례조항으로 주상 복합건물(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의 높이의 범위는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4배 이하로 한다.

제34조(공개공지 확보) ① (생 략)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친환경적으로 편리하게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파고라, 벤치, 조경시설 및 조명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삭 제
2. 삭 제
3. 삭 제
4. 삭 제
5. 삭 제

<신 설>

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한다.

제34조(공개공지 확보)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④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가장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최소폭은 4미터 이상일 것
4. 피로티 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 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것
5. 조경·긴의자·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기타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6. 공개공지 출입 부분에 별표5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7.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신청시 공개공지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을 제출하고, 시장은 유지관리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③·④ (생략)

제36조(이행강제금) 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③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36조(이행강제금) ①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이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한 경우”란 별표 3 제2호 중 위반 건축물란의 제5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회수는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로부터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 안에서 부과되 총 부과 회수는 5회로 한다.

④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로 한다.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법 제83조에 따른 용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의 제13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재난·재해 등으로 긴급조치를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 설>

⑤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

소유권이 변경된 후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2. 영 제115조의4제1항제2호부터 제

3호까지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3. 영 제115조의4제1항제4호의 경우: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2년

<신 설>

제36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

<신 설>

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 컨테이너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제36조의3(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최고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바닥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들이 거주하는 건축물

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 설>

제36조의4(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신 설>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 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36조의5(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 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 ·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 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 · 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전액
 3. 그 밖의 수입금
- ③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 조사 · 점검 비용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 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불연재료로 교체하는 공사비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별표 3]

이행 강제금 산정 기준(제36조 관련)

1.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위 반 건 축 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법 제14조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2.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법 제55조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3.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건축물	법 제56조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의한 이행강제금의 5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	법 제19조	시가표준액(용도변경 부분)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5.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6. 유지·관리 상태가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35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7. 건축선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6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8. 구조내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8조 제1항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9. 피난시설, 건축물의 용도·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계단,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49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10. 내화구조 및 방화벽이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11. 방화지구 안에서의 건축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5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2.5에 해당하는 금액

<삭 제>

위 반 건 축 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2.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한 건축물	법 제5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1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1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15. 건축설비의 설치·구조에 관한 기준과 그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한 법령 등의 기준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1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20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

2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위 반 건 축 물	해당법조문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금액
1. 사용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	법 제22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2. 대지 안의 조정규정을 위반한 건축물	법 제42조	시가표준액(조경의무면적에 상당하는 바닥면적)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3. 높이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6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
5. 용벽 등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축물	법 제83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6.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 없이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법 제19조 제3항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7.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	법 제20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8.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완료한 경우	법 제21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1.5에 해당하는 금액
9.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	법 제79조 등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에 해당하는 금액

<신 설>

<신 설>

[별표 5]

공개공지등 안내판 설치기준(제34조)

1. 표기 내용

가. 안내문: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표기

("이 곳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개공지(쉼터)입니다." 등)

나. 배치도: 공개공지 위치 및 영역 표시

다. 기타 공개공지 이용에 필요한 사항

2. 설치 규격: 0.5제곱미터(㎡) 이상

[별지 3]

관리번호

공개공지 관리대장(제34조 관련)

1. 공개공지 현황

위 치		목포시 로 (○○동) (번지)			
건물명			사용승인일		
건축 기본정보	대지면적	㎡	연면적		
	건축물 용도	용도	용도		
	층수	지상	층	무용도	
		지하	층		
	건축물 기타사항	용적률			
		완화			
		기타			
	건축주		연락처		
	설계자		연락처		
	시공사		연락처		
면적	㎡	유형			
공개공지 기본정보	조성 시기	조성	□설치(개소) □미설치(㎡)	번지	□설치(개) □미설치(㎡)
		타입	□설치(개) □미설치(㎡)	과고라	□설치(개) □미설치(㎡)
		기타	조성	□설치(개) □미설치(㎡)	기타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방법	□보통형(건물면, 바닥, 시설물에 부착) □스탠드형(독립된 표지판)		
	관리자	○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관리자로서 건축주가 시 공개공지 내용과 동일함을 확인합니다. 관리 건축사 (인)(사무소명:)			
공개공지 배치도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 관련)

접수번호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					
사 용 시 설	목포시 대양일반산업단지 내 해수취수시설(해수공급)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하는 사람	성 명(남/녀) (기업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마른김 일 생산량	천속	해수사용 공급라인	개 중 개 라인	해수 일 사용량	톤	
해수사용후 정화시설	설치, 미설치		상수도 일 사용량			
신 청 사 유 (기 타)						
위와 같이 「목포대양산단 해수취수시설」을 사용하여 공급되는 해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해수취수시설 해수공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48 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상수도요금 15% 감면. 다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 하게 개별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1항제8의2호의 요금감면 적용은 2021년 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 면할 수 있다.	제37조 (요금 등의 감면) ①----- ----- -----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u>8의2.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 에 따른 유치원 및 「영유아보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 집 : 상수도요금 15% 감면. 다 만,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상호 혼용 의 우려가 없는 개별계량기를 사 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여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하지 아니한다.</u>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④ 제1항제8의2호에 따라 수도요 금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1호 서 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u>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

수도요금 감면(신규·해지)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수 용 가	성명(시설명)	연락처	
	주소		
	수용가번호	구경	업종

신청내용 (지하, 관로누수)	누수일시	누수위치
	복구내용	
	보수일시	보수업체
감면사유	[] 옥내누수	
	[] 유치원 및 어린이집	

위와 같이 「목포시 수도 급수 조례」 제3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수용가와와의 관계 :

)

목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옥내누수 : 누수공사사진(전,중,후)사진첨부, 수리영수증 2. 유치원 및 어린이집 : 설립인가증, 해당증명서류 3. 수용가와 신청인이 서로 다를 경우: 관계 증명서 ※ 수도요금을 3회 이상 체납한 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동계량기를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개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어야하며, 부득이하게 요금산정이 어려울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49 호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2호 중 “1급에서 3급까지 중증”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요금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53조(요금의 감면)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6세 미만의 사람 및 65세 이상의 사람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급에서 3급까지 중증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6.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참전유공자증을 소지한 참전유공자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생략)	7. (현행과 같음)
<신설>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1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63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50 호

목포시 목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정보와 체험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목화를 홍보하고 목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화체험장”이란 목화를 홍보하고 체험하기 위한 시설로서 목포시 달동 1332일원에 조성된 목화온실, 목화문화관, 나무 어린이놀이기구 등을 포함 시설물 및 부대시설(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목화체험 프로그램”이란 목화 및 기타 부자재를 이용하여 공예품을 만들거나, 만져보는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체험료”란 체험장 내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재료비”란 체험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비로써 체험료와는 별도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자”란 목화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관리자”란 체험장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임명한 담당공무원 또는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① 시장은 체험장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체험장에는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 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경우에는 숲해설가 교육, 공예지도사, 유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휴장일) 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5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연휴
2. 제 1호를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체험료 등 징수) ① 체험료 및 재료비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체험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금액을 징수하며, 체험자는 체험료 납부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다.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체험자가 쉽게 볼 있는 곳에 체험료 및 재료비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체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체험료는 별표 1의 단
체요금을 적용하여 감면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목적의 행사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보호자 1명에 한정한다)
4.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 유공자
8.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후유증환자
9.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민주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의사자 및 유족(유족 1명에 한정한다)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포로 및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13.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1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5. 그 밖에 시장이 1호부터 14호까지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체험료 반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장은 체험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체험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체험 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 전액환불
2.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였을 때 : 전액환불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하지 못하였을 때 : 전액환불

제9조(세입조치) ① 체험장 프로그램 및 기타 수입은 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② 수입금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사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은 「지방회계법」을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① 시장은 체험장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①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운영비의 지원) ① 시장은 체험장 운영에 필요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받은 지원금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손해배상) 체험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목포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목화체험장 체험료(제6조 제1항 관련)

(1인/1회 기준)

구 분	금 액	비 고
목화체험프로그램	2,000원/인	체험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별도 부과함

※ 20명이상 단체 체험료의 50퍼센트 감면

[별지 제1호 서식]

목화체험장 프로그램 사용 신청서

성 명 (단 체)			
소 속		구 분	개인 (), 단체 ()
참가인원	명	성 별	남 (), 여 ()
E-mail		연 락 처 (휴대전화)	
주 소			
체험일시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시간)		
신 청 프로그램			
그 밖 의 사 항			

이와 같이 목화체험장 프로그램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날인 또는 서명)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13 호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발행)”를 “서류”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별지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통 장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통장경력	. . . ~ . . . (년 월)			
학 생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학 교 명			학 과	
	학 년			지원분야	학업성적우수/특기
	타장학금 수 해	지 급 처		보호자(통장) 과의 관계	
계좌번호(금융기관)				예 금 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

목포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훈 관계 서류 1부(해당시)

[별지 제2호 서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통 장	성 명	(남 · 여)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학 생	성 명	(남 · 여)	학 교 명	
	학 년		지원분야	학업성적우수/특기
확 인	통장경력	년 월	담 당 자 인 확 인	직급 성명 (인)
	추천사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에 따라
 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 (장학금의 신청) ----- ----- ----- ----- -----.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u>서류</u>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발행) 1통	1. ----- ----- <u>서류</u> -----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삭 제>
3. 삭 제	
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4. (현행과 같음)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 (별지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3조 (추천) ----- ----- -----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 -----.
제4조 (선발) 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선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삭 제>

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 1 호 서 식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table border="1"> <tr> <td rowspan="4">인 적 사 항</td> <td>성명</td> <td>생년월일 (성별)</td> <td>직위</td> <td>통장</td> </tr> <tr> <td colspan="4">주소</td> </tr> <tr> <td>간접</td> <td>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td> <td>휴대폰번호</td> <td></td> </tr> <tr> <td>직업</td> <td>자택번호</td> <td></td> <td></td> </tr> <tr> <td rowspan="2">장 학 생</td> <td>성명</td> <td>생년월일 (성별)</td> <td>학교명 (학년(반)과)</td> <td>학년 학교</td> </tr> <tr> <td>통장과의 관계</td> <td>성적개요</td> <td>특기개요</td> <td></td> </tr> <tr> <td colspan="2">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td> <td colspan="3">종 류() 분기별 합산금액()</td> </tr> <tr> <td>건강보험료</td> <td>원</td> <td>지방세과세액 (재산세, 자동차세)</td> <td colspan="2">원</td> </tr> <tr> <td colspan="5">② 가 족 사 항</td> </tr> <tr> <td>성명</td> <td>생년월일</td> <td>주소</td> <td>장학생과의 관계</td> <td>비고</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5">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td> </tr> <tr> <td>구비서류</td> <td colspan="4">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td> </tr> <tr> <td>유의사항</td> <td colspan="4"> 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 ※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td> </tr> </table>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위	통장	주소				간접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휴대폰번호		직업	자택번호			장 학 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과)	학년 학교	통장과의 관계	성적개요	특기개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		종 류() 분기별 합산금액()			건강보험료	원	지방세과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원		② 가 족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학생과의 관계	비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 ※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인 적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직위	통장																																																																							
			주소																																																																										
			간접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	휴대폰번호																																																																								
		직업	자택번호																																																																										
	장 학 생	성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과)	학년 학교																																																																								
		통장과의 관계	성적개요	특기개요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 (학비 보조금) 혜택 여부		종 류() 분기별 합산금액()																																																																										
	건강보험료	원	지방세과세액 (재산세, 자동차세)	원																																																																									
	② 가 족 사 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장학생과의 관계	비고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상기 사실을 허위 없이 기록·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통장 성명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학생의 재학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유의사항	① 란은 보호자(부·모)나 장학생이 당해 연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령한 모든 장학금(학비보조금)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 ② 란은 주민등록상 가족을 빠짐없이 모두 기재. 단, 부모는 타 지역 거주자도 기재 ※ 성적개요는 재적(입학) 학년의 평균점과 석차를 기재함																																																																												

 통장자녀 장학금 신청서 | | | | | | |---|-------------|-------|---------|-----------| | 통
장 | 성명 | (남·여) | 생년월일 | | | | 주소 | | 연락처 | | | | 통장경력 (년 월) | | | | | 학
생 | 성명 | (남·여) | 생년월일 | | | | 학교명 | | 학 과 | | | | 학 년 | | 지원분야 | 학업성적우수/특기 | | | 타장학금
수혜 | 지급처 | 보호자(통장) | | | | | 총수령액 | 과의 관계 | | | 계좌번호(금융기관) | | | 예금주 | | | <p align="center">년 학기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다음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합니다.</p> <p align="center">년 월 일</p> <p align="center">신청인(통장) (서명 또는 날인)</p> <p align="center">목포시장 귀하</p> | | | | | | ※ 구비서류
1. 추천서 1부
2. 성적증명서 또는 입상 관계 서류 1부
3. 등록금 납입증명서(대학생) 1부
4. 통장 상환 관계 서류 1부(해당시) | | | | | |

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 지 제 4 호 서 식	통장자녀 장학생 추천서						< 삭 제 >		
	민 적 사 항	통 장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직 위	통장
			주 소						
			재적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공적개요						
	장 학 생	장 학 생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교명 학년(반)과	학년 학교 반과
			통장과의 관계		품 형			특기개요	
	가 족 사 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학 생 과의관계		비 고	
	관 련 공 부 확 인	관련서류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통장 위 해촉대상							
타장학금(학비보조금) 혜택여부									
등 장 종합의견									
위자를 목포시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외거 20 학년도 통장자녀 장학생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인 통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서식	현 행	개 정 안
별 지 제 5 호 서 식	장 학 금 지 급 신 청 서 주 소 학교명 및 학과명 학년 학 교 학 과 학 년 반 성 명 (남 여) 생 년 월 일 계 좌 번 호 (은행) 본인은 20 년도 목포시 등장 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된 바, 이에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학생) 성 명 (인) 동 통장 성 명 (인) 확인자 동장 (직인) 목포시장 귀하	< 삭 제 >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14 호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제37조제1항제8호”를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 ① 삭제 ②·③ (생략) ④조례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감면액은 일반회계(교육지원사업)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 (정수해제 수수료)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관 구경 40mm 미만 6,000원 2.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12,000원 [별지 제22호 서식]	제21조 (요금 등의 감면)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제37조제1항제8호 및 제8의 2호----- (교육·보육지원사업) -----. <삭 제> <삭 제>																																											
<table><tr><td colspan="2">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td><td colspan="2">처리기한</td></tr><tr><td colspan="2"></td><td colspan="2">1일</td></tr><tr><td>수용기번호</td><td colspan="3"></td></tr><tr><td>주 소</td><td colspan="3">목포시</td></tr><tr><td>소유자 (사용자)</td><td></td><td>전 호 번 호</td><td></td></tr><tr><td>누수지역 (누수처)</td><td colspan="3"></td></tr><tr><td colspan="4">위와 같이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5호에 따라 상수도 누수처를 보수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td></tr><tr><td colspan="4">년 월 일 (서명 또는 인)</td></tr><tr><td colspan="4">목 포 시 장 귀하</td></tr><tr><td rowspan="2">구비서류</td><td colspan="3">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td></tr><tr><td colspan="3">-누수공사사진(전,중,후) -수리 영수증</td></tr></table>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1일		수용기번호				주 소	목포시			소유자 (사용자)		전 호 번 호		누수지역 (누수처)				위와 같이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5호에 따라 상수도 누수처를 보수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누수공사사진(전,중,후) -수리 영수증			
상수도 누수 감면 신청서		처리기한																																										
		1일																																										
수용기번호																																												
주 소	목포시																																											
소유자 (사용자)		전 호 번 호																																										
누수지역 (누수처)																																												
위와 같이 「목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5호에 따라 상수도 누수처를 보수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누수공사사진(전,중,후) -수리 영수증																																											

목포시 고시 제2021-25호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1구역 해제기준 관련 기한연장 고시

1. 전라남도 고시 제2009-453호(2009.11.27), 제2011-408호(2011.11.18.), 제2012-368호(2012.11.05.) 및 제2017-350호(2017.10.12.)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및 변경 결정된 목포 서산온금지구 재정비촉진1구역에 대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일에 대한 기한을 연장하고, 제7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목포시 도시문화재과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2월 8일

목 포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가. 해제기한 연장구역(1개소)

지 구 명	구 역 명	위 치	구역지정일	정비구역 해제일 (토지등소유자방식)	비 고
서산온금지구	재정비 촉진 1구역	전남 목포시 온금동 122-3번지 일원	2012.11.5.	2020.10.5.	

나.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2022. 10. 5.까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제6항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목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의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목포시 공고-191호

입 법 예 고

「목포시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8.

목 포 시 장

1. 개정이유

- 유달경기장 용도폐지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중 유달경기장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함

2. 주요 내용

가. 정의

- “체육시설”이라 함은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실내체육관 수영장, 유달경기장, 유달시립정구장 이라는 규정에서 ‘유달경기장’을 삭제(안 제4조)

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관련) [별표1] 일부 개정

- 유달경기장 명칭 및 위치 삭제

다.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2] 일부 개정

- 유달경기장 전용사용료 삭제

라. 체육시설 연습사사용료 [별표3] 일부 개정

- 유달경기장 연습사사용료 삭제

마.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별표4] 일부 개정

- 유달경기장 중계방송료 삭제

바. 체육시설 부속시설 사용료(제12조 제1항 관련) [별표5] 일부개정

- 유달경기장 부속시설 사용료 삭제

사. 체육시설 상행위 사용료 [별표6] 일부 개정

- 유달경기장 상행위 사용료 삭제

3. 개정 조례안 : 붙임**4.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5. 입법예고

- 기 간 : 2021. 2. 8.(월) ~ 3. 2.(화) (21일간)

6. 의견제출

이 규칙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시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나. 의견제출처 : 58608, 전남 목포시 대양로 286 목포시청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다. 제출방법 : 우편, 팩스(061-270-8302), 직접방문 등

7.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자치행정과(☎ 061-270-40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포시 조례 제 호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유달경기장, 유달시립정구장**” 을 “**유달시립정구장**” 으로 한다.

별표 1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3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4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별표 6 중 유달경기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정의) ----- -----.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u>유달경기장</u> , <u>유달시립정구장</u> , <u>유달시립테니스장</u> ,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유달검도체육관,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부주산테니스장,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부주산축구장, 부주산족구장,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영산호카누경기장 으로 한다.	1. ----- ----- --- <u>유달시립정구장</u> ----- ----- ----- ----- ----- ----- ----- ----- ----- -----.																																																																										
2. ~ 17. (생략)	2. ~ 17. (현행과 같음)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th>위치</th></tr> </thead> <tbody> <tr><td>· 목포실내체육관</td><td>목포시 대양로 286(상동)</td></tr> <tr><td>·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td><td>목포시 대양로 286(상동)</td></tr> <tr><td>·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td><td>목포시 대양로 286(상동)</td></tr> <tr><td>· 유달경기장</td><td>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td></tr> <tr><td>· 유달시립정구장</td><td>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td></tr> <tr><td>· 유달시립테니스장</td><td>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td></tr> <tr><td>· 유달검도체육관</td><td>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td></tr> <tr><td>· 유달게이트볼구장</td><td>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td></tr> <tr><td>·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td><td>목포시 대양로 286(상동)</td></tr> <tr><td>·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td></tr> <tr><td>· 부주산 테니스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td></tr> <tr><td>·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td><td>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td></tr> <tr><td>· 부주산 축구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td></tr> <tr><td>· 부주산 족구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td></tr> <tr><td>·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td></tr> <tr><td>· 영산호 카누경기장</td><td>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td></tr> <tr><td>·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td><td>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td></tr> <tr><td>· 부주산 국민체육센터</td><td>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td></tr> </tbody> </table>	명칭	위치	·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유달경기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검도체육관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 부주산 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	·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	· 부주산 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부주산 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 영산호 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	·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table border="1"> <thead> <tr> <th>명칭</th><th>위치</th></tr> </thead> <tbody> <tr><td>· 목포실내체육관</td><td>목포시 대양로 286(상동)</td></tr> <tr><td>·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td><td>목포시 대양로 286(상동)</td></tr> <tr><td>·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td><td>목포시 대양로 286(상동)</td></tr> <tr><td>· 유달시립정구장</td><td>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td></tr> <tr><td>· 유달시립테니스장</td><td>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td></tr> <tr><td>· 유달검도체육관</td><td>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td></tr> <tr><td>· 유달게이트볼구장</td><td>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td></tr> <tr><td>·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td><td>목포시 대양로 286(상동)</td></tr> <tr><td>·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td></tr> <tr><td>· 부주산 테니스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td></tr> <tr><td>·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td><td>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td></tr> <tr><td>· 부주산 축구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td></tr> <tr><td>· 부주산 족구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td></tr> <tr><td>·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td><td>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td></tr> <tr><td>· 영산호 카누경기장</td><td>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td></tr> <tr><td>·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td><td>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td></tr> <tr><td>· 부주산 국민체육센터</td><td>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td></tr> </tbody> </table>	명칭	위치	·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유달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검도체육관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 부주산 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	·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	· 부주산 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부주산 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 영산호 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	·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명칭	위치																																																																										
·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유달경기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검도체육관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 부주산 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																																																																										
·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																																																																										
· 부주산 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부주산 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 영산호 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																																																																										
·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명칭	위치																																																																										
·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유달시립정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검도체육관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시 용당로 101(용당동)																																																																										
·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목포시 대양로 286(상동)																																																																										
·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목포시 옥암동 산 256-1번지																																																																										
· 부주산 테니스장	목포시 옥암동 산 271-1번지																																																																										
·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목포시 양율로 397번길 90(상동)																																																																										
· 부주산 축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7번지																																																																										
· 부주산 족구장	목포시 옥암동 산 12-1번지																																																																										
· 부주산 산악자전거경기장	목포시 옥암동 산 26-1번지																																																																										
· 영산호 카누경기장	목포시 남악로 22-5(옥암동)																																																																										
· 부주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센터	목포시 부주로 132-12(옥암동)																																																																										
·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목포시 부주로 312(옥암동)																																																																										

현행

개정안

[별표2]체육시설 전용사용료(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체육경기				체육경기의외				비고	
	일시사용		주간		일시사용		주간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유달경기장	필드	70,000	90,000	90,000	120,000	150,000	180,000	200,000	240,000	동시 사용 2할 감
	트랙	30,000	50,000	50,000	70,000	80,000	100,000	120,000	150,000	
목포실내체육관		70,000	90,000	90,000	11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야간 사용 5할 가산
실내수영장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다이빙장		70,000	100,000	100,000	15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정구장, 테니스장 (코트당)	-	-	12,000	18,000	-	-	18,000	23,000		야간 사용 5할 가산
목포시공도장	-	-	20,000	30,000	-	-	40,000	60,000		1인당 1사대 주간

※ 비교 : 조례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학교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별표 3]체육시설 연습사용료(단위:원)

구분	기준	개인			단체			비고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지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지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유 달경기장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목포실내체육관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수영장	일련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2시간 기준
	월회원	45,000	35,000	25,00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 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월강습	10,000원 적용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 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정구장 테니스장	2시간 기준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별표2]체육시설 전용사용료(단위 : 원)

구분 시설별	체육경기				체육경기의외				비고
	일시사용		주간		일시사용		주간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평일	토·공 휴일	
목포실내체육관	70,000	90,000	90,000	110,000	140,000	160,000	180,000	200,000	야간 사용 5할 가산
실내수영장	100,000	150,000	200,000	25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다이빙장	70,000	100,000	100,000	150,000	100,000	150,000	150,000	200,000	
정구장, 테니스장 (코트당)	-	-	12,000	18,000	-	-	18,000	23,000	야간 사용 5할 가산
목포시공도장	-	-	20,000	30,000	-	-	40,000	60,000	1인당 1사대 주간

※ 비교 : 조례 제16조제7호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학교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4호까지에 해당하는 단체 등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별표 3]체육시설 연습사용료(단위:원)

구분	기준	개인			단체			비고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지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어른	청소년 군인	경노·어린이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수급자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지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	
목포실내체육관	1회	1,300	1,000	900	1,000	800	700	
실 내수영장	일련	2,500	2,000	1,500	2,000	1,500	1,000	2시간 기준
	월회원	45,000	35,000	25,000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 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월강습	10,000원 적용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성 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다이빙장	2시간 기준	5,000	4,000	3,000	4,000	3,000	2,000	
정구장 테니스장	2시간 기준	2,000	1,500	1,000	1,500	1,200	800	
	주간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월 회원	30,000	22,500	10,000				
	월 강습	70,000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

※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관 련 법 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2조(회계 간의 재산 이관) 지방자치단체의 각 회계 중 어느 하나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을 다른 회계의 재산으로 이관할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관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무상으로 할 수 있다.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7·28, 2006·1·16, 2008·3·31>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목포실내체육관, 목포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유달경기장, 유달시립정구장, 유달시립테니스장, 목포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유달검도체육관, 유달게이트볼구장, 목포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부주산 국제클라이밍센터, 부주산 국민체육센터, 부주산 국제파크골프장, 부주산테니스장, 목포실내체육관 궁도장, 부주산축구장, 부주산족구장, 부주산산악자전거경기장, 영산호카누경기장 으로 한다

